

퇴직연금 거래신청서(개인형IRP)

본인확인	판매직원	담당	책임자

※ 편입하는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가능

전 산 인 자 란

1. 기본정보

20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해피콜 수신	<input type="checkbox"/> 전화(휴대폰) 해피콜 <input type="checkbox"/> 온라인(모바일 웹) 해피콜 신청 ※ 일정횟수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 손님이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2.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퇴직금융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계좌개설
<input type="checkbox"/> 퇴직금융+적립용	해당 가입자력에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당행 퇴직연금 가입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당행 퇴직연금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input type="checkbox"/>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적립용 연간납입한도 자 필 기 재 원 * 전금융기관 연금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 [확인사항] ①세금우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세금우대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연금계좌 계약금액/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타금융기관 정보를 조회합니다.

3. 운용지시

운용지시방법	<input type="checkbox"/> 일반상품 <input type="checkbox"/> 포괄운용지시	
구분	상품명	매수비율(%)
기업 부담금 (퇴직금)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개인 부담금	<input type="checkbox"/>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기업부담금(퇴직금)과 동일한 운용지시(√체크 후 아래 상품명 및 매수비율 작성 생략)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적립식 상품 ^{주1)}	(개인부담금 중 저축은행 적립식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금역 자필기재	

주1) 저축은행 정액적립식 상품은 최초에 해당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입금 시 매월 최대 1회 매수 가능하며, 최초 입금금액과 상이한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또는 매월 1회 매수 후 추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계속성 운용지시에 등록된 상품으로 매수됩니다.
 ※ 위 간의 상품 개수 초과 시 "퇴직연금 입금예정상품등록/변경 신청서[별지]"에 추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대체상품매수 동의 및 통지서비스에 대한 고객 확인

대체상품 매수 동의여부	원리금 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상품제공한도 초과, 자사 정기예금 상품 운용 불가 등)에는 하나은행이 정한 타행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자동 (재)예치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대체상품 매수 동의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만기통지방법	원리금상품(정기예금 등) 만기도래 시 전월 통지 발송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세지(SNS) <input type="checkbox"/> 수신거부]
운용수익 통지	월말 펀드 수익률 통지 [통지신청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안함] [통지방법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SNS 또는 문자메세지] 월말 적립금 운용안내 [통지신청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SNS 또는 문자메세지) <input type="checkbox"/> 신청안함]
서비스 통지 제외 요청	입금예정상품 또는 보유상품 등록/변경 안내, 부담금 입금 안내, 연금수령관련 안내 등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로 발송되는 서비스 통지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발송제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제외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안함]
법적 통지 안내	법적통지[가입자 교육자료 발송(최초 1회 우편통지 필수), 약관 변경 안내, 법령에 의한 상품매매 불능 또는 위험자산 한도초과 등]은 수령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또는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5. 환매수수료 부과 확인(환매수수료 있는 투자상품 매수 시 또는 환매 불가 상품 매수 시 기재)

□ 환매수수료 발생시	[<input type="text"/> 상품명 <input type="text"/> 자필 기재] 상품 환매시 환매수수료 (<input type="text"/>)%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환매 불가능한 경우	[<input type="text"/> 상품명 <input type="text"/> 자필 기재] 상품 환매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6. 고객 유의사항

상품 매매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매매신청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顺延되어 매매됩니다.(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부담금이 입금된 다음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시점 금리를 확인하시려면 pension.hanabank.com에 사업자 공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 따라 매매에 소요되는 영업일이 상이하므로 매매완료일을 고려하여 상품 매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다음 영업일,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개별 상품 투자설명서 매입/매도기준일 +1영업일)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이율보존형 보험)의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상품운용방법 확인	<p>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예정일의 2영업일 전까지 손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만기일(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영업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금리가 낮은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됩니다. ③ 저축은행 정기예금 만기도래 시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하되, 재예치된 금액과 다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금리가 낮은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예금자 보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퇴직연금(DC,IRP)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정기예금,이율보존형 보험)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DC,IRP)에 가입한 경우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이며, 다른 금융기관 및 복수로 퇴직연금(DC,IRP)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일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일자는 다음 영업일로顺延됩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외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운용지시에 대한 고객 확인	<p>포괄운용지시란, 가입자가 운용방법(상품 만기 등)을 지정하면 입금 및 만기시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지방은행, 저축은행 정기예금 제외) 중 최적금리상품을 자동매수하는 운용지시 방법입니다. 계속성 운용지시에서만 포괄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담금 입금, 상품(시중은행 정기예금) 만기시마다 은행에서 제공 가능한 한도 내에서 손님이 요청한 상품운용기간을 반영하여 최적금리상품으로 매수합니다. ② 상품을 선정하는 경우, 금리를 우선으로 고려하나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준수, 상품제공기관의 상품제공 거절, 상품제공기관의 당행 상품제공 한도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정한 차선의 상품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운용지시가 반드시 최고금리 상품의 매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보유 중인 만기도래상품은 만기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전액 매도 후 매도 당일 지정된 포괄운용지시상품(매도 당일 최적금리상품)으로 익영업일에 매수되며, 매수일자 기준 고시금리로 적용됩니다. ④ 매도 후 신규 매수된 상품이 기존 상품과 동일할 수 없으며, 매도매도거래에 따라 만기일과 신규매수일까지 2영업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품매도/매수가 진행 중인 경우 지급 및 보유상품변경 거래가 제한됩니다. 			
ETF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매매 신청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顺延되어 매매됩니다. (D+1영업일 체결, D+3영업일 자금 결제) · 상품 매매 시 수량(좌수) 기준으로 거래되며 미체결된 금액은 금리가 낮은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상품 매도(D일) 후 다른 ETF를 매수하는 경우 D+1영업일에 가능하며, ETF 외 상품을 매수하려면 D+4영업일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ETF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퇴직/계약이전, 해지 등) 거래 중 보유하신 ETF의 분배금이 발생할 경우 예정된 지급일보다 일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납입 안내 :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상 명시된 수수료율 참조)에 의거 매년 계약유당일(최초 부담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DB, 개인형IRP, DC 개인부담금, 기업형IRP 개인부담금 : 적립금 차감 / DC 회사부담금, 기업형IRP회사 부담금 : 회사 별도납. ■ 퇴직연금 구속행위 제한(중소기업의 대표자, 개인) : 퇴직연금 신규(계약이전 포함)후 1개월이내 여신실행(신규, 대환, 재약정)이 제한되며, 여신실행 1개월이내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 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당행의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p>※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내의 제공 상품 제공기관에서 개발 및 관리하며, 상품 도입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하여 하나은행 연금사업지원섹션에서 관리합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위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40%;"></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가입자</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input type="text"/> 서명 또는 (인)</td> </tr> </table>			가입자	<input type="text"/> 서명 또는 (인)
	가입자	<input type="text"/> 서명 또는 (인)		

본인은 하나은행의 개인형IRP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가입자 자필기재 :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으며, [가입자 자필기재 : 수령] 하였기에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개인형IRP 가입을 신청합니다.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가입자	<input type="text"/> 서명 또는 (인)
	대리인	<input type="text"/> 서명 또는 (인)

